

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 
검 토 보 고 서

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
(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)



행정재경위원회  
전문위원

#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2410호
- 나. 제출자 : 금천구청장
- 다. 제출일자 : 2023. 11. 15.
- 라. 회부일자 : 2023. 11. 15.

## 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금천구 기금운용계획(안)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.

## 3. 설치근거

- 가.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제11조
- 나.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 제8조

## 4. 기금운용의 기본방향

- 가. 기금사업의 목표

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·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

- 나.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

설치된 고향사랑 기금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위한 사업 추진,  
고향사랑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운용

## 5.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

### 가. 연도말 기금 조성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3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	2024년도 조성계획			2024년도 말 조성액 <sup>㉡</sup> = <sup>㉢</sup> + <sup>㉠</sup>	비고
		수입 <sup>㉢</sup>	지출 <sup>㉣</sup>	증감 <sup>㉤</sup> = <sup>㉢</sup> - <sup>㉣</sup>		
고향사랑기금	0	31,990	0	31,990	31,990	

### 나. 기금 총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2024년도 말 조성액 <sup>㉠</sup>	융자금 미회수 채권 <sup>㉡</sup>	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<sup>㉢</sup>	총 조성규모 <sup>㉤</sup> = <sup>㉠</sup> + <sup>㉡</sup> - <sup>㉢</sup>
고향사랑기금	31,990	0	0	31,990

### 다. 자금 운용 계획

#### ○ 수입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수입액	전년도 수입액	증 감
계	31,990	0	31,990
전 입 금	15,000	0	15,000
이자수입	820	0	820
고향사랑 기부금 수입	16,170	0	16,170

#### ○ 지출계획

(단위 : 천원)

항 목	지출액	전년도 지출액	증 감
계	0	0	0
"지출계획 없음"	0	0	0

## 6. 검토의견

- 고향사랑기금은 「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·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도에 설치되는 기금임.
-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
수입내역은  
전입금 15,000천원, 이자수입 820천원,  
고향사랑 기부금 수입 16,170천원,  
총 31,990천원이며,  
지출내역은  
없습니다.
- 본 기금안은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의 관리·운용으로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법령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고향사랑기금은 지방재정 확충, 지역경제 활성화, 고향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써 향후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붙임 : 관련법령 1부. 끝.

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23. 9. 22.] [법률 제19241호, 2023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159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 
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(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 
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)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  
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, 기금의 설치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 
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“기금”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  
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  
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5. 7. 24.,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 
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  
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  
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  
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##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[시행 2023. 7. 10.] [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, 타법개정]

**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“고향사랑기금”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라 모집·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
2. 지역 주민의 문화·예술·보건 등의 증진
3. 시민참여,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
4.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

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(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)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.
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

( 제정) 2022.12.30 조례 제1283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
**제8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)**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여야 하며,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·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
2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**제10조(기금의 사용 목적)** ① 구청장은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·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, 인쇄비,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.

**제11조(기금의 관리 및 운용)**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
- ② 기금은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·관리한다.
-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